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2. 10.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mm)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러차이(Jiangsu Lecai Printing Materia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10
	2. 코닥[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코닥 인베스트먼트[Kodak (China) Investment Co., Ltd.] 나. 코닥 코리아(Kodak Korea Ltd.) 다.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 Company) 라. 화광(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 마. 화광 난양(Lucky Huaguang Nanyang Trading Co., Ltd.) 바. 화광 바오리(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 사. 종인(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 아. 아그파 화광[Agfa Huaguang (Shanghai) Printing Equipment Co., Ltd.] 자. 화푸(Henan Huafu Packaging Technology Co., Ltd.) 차. 코닥 일렉트로닉[Kodak Electronic Products (Shanghai) Company Limited]	3.60
	3. 화평(Chongqing Huafeng Dijet Printing Material Co., Ltd.)과 그 관계사인 화평PM(Chongqing Huafeng Printing Material Co., Ltd.)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61
	4. 그 밖의 공급자	4.87

비고: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공급자와 제 4 호의 “그 밖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
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밖
의 공급자” 에 대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해당 공급
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